

고소인 보충진술

사건번호 2014-000687

고 소 인 유우성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 귀 중

고소인 보충진술

사건번호 2014-000687
고 소 인 유우성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위 고소인의 대리인은 피고소인 특정, 해당 범죄사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진술 합니다.

다 음

1. 피고소인의 특정

고소인은 2014. 1. 고소장 제출 당시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정황이 있고,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은닉 등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진술하고,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검사 제출 문서가 실제 모두 위조되었다는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였고(증 제27호증 사실조회회신 참조), 검찰은 증거위조 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검찰 증거위조 진상조사팀(이후 특별수사팀으로 전환) 수사결과 이 사건 증거위조 등에 가담한 국정원 수사관, 국정원 협력자 등이 일부 특정되어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범죄의 윤곽 및 가담자 등이 어느 정도 드러남에 따라 이에 고소인은 증거위조 뿐만 아니라 증거은닉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수사관 등을 특정하고자 합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 등에 가담한 피고소인으로 이미 기소된 국정원 협력자 김 00,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기획팀장 김 00 이외에 권 00 과장, 국가정보원 지휘, 결재라인인 대공수사처장 이 00(3급), 전 대공수사단장 김 00(2급, ~ 2013. 5.까지 담당자), 현 대공수사단장 최 00(2013. 5. 이후 현재까지 담당자), 대공수사국장, 국가정보원 2차장 서0호 및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을 특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하고 현재까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검사 이0원, 이0성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는 바,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및 미비점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4. 3. 31. 이 사건 증거위조 부분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및 공증서', '허릉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유가강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 등 증거 위조에 가담한 김 00(중국 조선족으로 국정원 협력자), 김 00(국정원 대공수사팀 기획담당 과장)를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증 제28호증 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위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는 ① 실제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수사관 이외에 지휘, 결재라인(특히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국정원 2차장, 국가정보원장 등)과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이0원, 이0성) 등에 대하여 수사가 미흡하였던 점, ② 관련수사가 문서위조 부분에 국한되고, 고소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의 은닉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③ 범죄사실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를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가 아닌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으로 의율하였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국정원 대공수사 지휘, 결재 라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1)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지휘, 결재 라인 전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국가정보원이 국외파견 요원에게 조작관련 지시를 전달할 때 활용한 전문이 2급인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문서로 확인된 점, 증거조작에 대한 비용 지급 등 공작금 또한 2급 이상의 지휘부가 결재해야만 집행된다는 점, 국정원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권모 팀장 및 이00 영사를 선양총영사관에 파견 보내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 지휘, 결재라인에서 이 사건 증거조작을 충분히 알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증 제29호증 관련 신문기사 등).

따라서 현재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기획담당 과장 김 00 이외에

대공수사처장 이 00(3급), 전 대공수사단장 김 00(2급, ~ 2013. 5.까지 담당자), 현 대공수사단장 최 00(2013. 5. 이후 현재까지 담당자), 대공수사국장 또한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이 사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수사, 기소 단계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특히 1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항소심에 더욱 큰 사회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정원은 내부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지원 담당자(수사관 권 00 과장 등)를 별도로 두었고, 이 사건 담당자는 선양주재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에게까지 증거위조를 지시할 정도로 증거조작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국정원 대공수사팀은 사전에 기획회의를 하고 팩스 번호 조작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신한 문서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으며, 증거위조에 대한 대가로 비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범죄행위는 국정원 상부 지휘, 결재라인의 공모,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조직구조를 감안한다면 지휘 체계 상급자에 대한 보고, 승인, 결재 없이 기획담당과장에 불과한 자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거를 조작하고 선양총영사관의 영사(국정원 파견 요원)에게 증거조작에 가담할 것을 지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국가정보원 2차장 서천호와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에게 별도의 보고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 2차장 서0호 및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이 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증거위조를 지시하였던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검사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1) 또한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이0원, 이0성에 대한 소환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담당검사들은 이미 2013. 6.경 대검찰청에서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 기록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했음에도, 재판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정원을 통해 출입경기록을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출입경기록을 제출받아 그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해서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사 스스로도 의심스러워 화룡시공안국에 확인공문을 보낸 사실과 화룡시에서 답변이 오기도 전에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담당검사들도 위조사실에 대해 인식이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3. 12. 6.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사제출 출입경기록에 대하여 강력하게 위조주장을 하고 중국 공무원들의 위조확인 동영상을 포함한 증거의견 PT를 진행하였으며, 국정원의 공작원이라 자칭하는 자가 출입경기록 위조에 대해 예언한 바 있으므로 중국문서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증 제30호증 공판조서, 증 제31호증 검찰 의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들은 2013. 12. 18. 법정에서 조선족 김모

씨가 위조해 온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상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아무런 검증 없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과정에서 위 상황설명서 도장은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에 찍힌 도장과 다르다는 사실이 포렌식 과정에서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즉, 담당검사가 조금이라도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증거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객관적 검증을 거쳤더라면, 충분히 문서위조 정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담당검사들도 위 증거위조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위조행위를 인식하고 묵인하였거나 미필적 고의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담당검사 이0원, 이0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던 것인지(국가보안법 증거날조죄에 따르면, 이러한 위조증거의 사용 -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 일체 -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담당검사가 적극적으로 증거위조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가사 담당검사들이 사전에 국정원의 증거위조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증거제출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검사는 문제가 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변호인측으로부터 제기되었던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담당검사들은 위조 의혹이 있는 증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기는 커녕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재판부에 계속하여 위 증거들이 공적 루트

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된 것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소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는바, 이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증 제32호증 변호인의견서 참조).

5. 증거은닉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1) 한편,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증거위조 뿐만 아니라 증거은닉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및 담당검사 이0원, 이0성에 대한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기소 전 수사가 진행될 당시 담당검사 이0성은 국정원에 파견근무를 나가 있는 상태로,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에 관여, 지휘하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담당검사 이0원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내역조회를 신청한 당사자로서 2012. 12. 당시 이미 통화내역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2) 증거은닉 가운데 통화내역조회결과 자료 미제출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고소내용을 보충합니다.

2012. 12.경 KT 통신회사 등에 대한 유우성의 통신사실자료 확인 요청은 이 사건 담당검사인 이0원 검사의 신청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회신된 고소인의 통화내역결과를 보면, 고소인 유우성이 2012. 1. 23.경 중국에서 통화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즉, 당시 담당검사 이0원을 비롯한 유우성 대공수사팀은 모두 2012. 1. 23.경 유우성이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객관적 사실과는 정 반대로 담당검사는 유우성이 2012. 1. 23.경 북한에서 보위부 사람을 만나 지령을 수수하고, 휴대폰 등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보위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담당검사, 유우성의 대공수사팀이 2012. 12. 당시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2012. 1. 23. 유우성이 중국에 있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통화내역 등 증거를 은닉하고, 2013. 2. 26. 공소장에 2012. 1. 23. 유우성이 북한에 있었다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6. 결론

위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고소내용을 보충하오니, 신속하게 피고소인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목 록

- | | |
|------------|--------------------|
| 1. 증 제27호증 | 사실조회회신 |
| 1. 증 제28호증 | 관련 신문기사 |
| 1. 증 제29호증 | 관련 신문기사 |
| 1. 증 제30호증 | 2013. 12. 6.자 공판조서 |

1. 증 제31호증

검찰 의견서

1. 증 제32호증

변호인 의견서

2014. 4.

위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천 낙 봉

변호사 장 경 옥

법무법인 율 변호사 양 승 봉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 용 민

변호사 김 진 형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김 유 정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 귀 중

